

제 호			
1. 성 명 (생년월일,사업자등록번호)		성 별	사진 3.5cm×4.5cm
2. 주 소			
3. 검 사 범 위			
<p>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방산림청장 직인</p>			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.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 - 자격 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 -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
 -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
- 목재등급평가사는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합니다.
 -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 등의 검사 업무
 -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
 -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
 - 목재제품의 생산·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
 - 목재제품의 선별·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
 -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